

경기도고시 제2024-5024호

금토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재수립한 「금토천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30.
경기도지사

1.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명칭	하천종류	당초변경	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금토천	지방하천	당초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안골교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운중천(지방) 합류점	3.07	하천중심선 적용 및 금토천(소하천) 경계설정 (+0.07km)
		변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용인-서울고속도로 하단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운중천(지방) 합류점	3.14	

2. 하천기본계획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목적

- 금토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으로 유역내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 및 금토공공주택지구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연평균강우량, 수자원 부족량 현황

하천명	유역면적(km ²)	연평균강우량(mm)	수자원 총량(백만m ³ /년)	유출량(백만m ³ /년)	손실량(백만m ³ /년)
금토천	9.48	1,333.2	12.64	7.31	5.33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km ²)	계획규모(년)	기본홍수량(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m ³ /s)	하도분담 홍수량(m ³ /s)	비고
금토천	금토천 종점	9.48	100	192	-	192	
	외동소하천 합류점	5.78	100	124	-	192	
	외동소하천 방수로 합류점	5.56	100	119	-	124	외동소하천 방수로신설

라.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 ²)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금토천	금토천 종점	9.48	100	192	192	36.16	107
	외동소하천 합류점	5.78	100	124	192	50.68	68
	외동소하천 방수로 합류점	5.56	100	119	124	53.89	47

마.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하천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m)
금토천	0+000 ~ 3+145	양안	근린친수	6,290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하천과), 성남시청(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청(하천과), 성남시청(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발생연월일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면적(m ²)	
금토천	지방 하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용인-서울고속도로 하단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운중천(지방) 합류점	3.14	152,090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000)

4. 폐천부지 등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청(하천과), 성남시청(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변경·폐지일 및 사유)
		위 치	면적(m ²)		
금토천	지방 하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403외 58필지	9,833	처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15-3외 12필지	2,218	보전	

- ※ 관계서류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000)